

December 24, 2015

## FATCA, CRS의 시행을 위한 국내 이행규정의 개정 및 고시(2015. 12. 16.)

금융위원회는 2015. 12. 16.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이하 “개정 이행규정”이라 합니다)을 고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 6.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협정)’ 이행을 위하여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 “구 이행규정”이라 하며, 개정 이행규정과 총칭하여 “이행규정”이라 합니다)을 제정했었는데, 2014. 10. OECD회원국을 비롯한 각국이 서명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에 따라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국내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구 이행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상세한 경과는 저희 법인의 2015. 12. 15.자 뉴스레터 참조, => [2015. 12. 15.자 뉴스레터 확인하기](#))

### 1. 이행규정의 목적

이행규정은 국가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를 실사하고, 교환 대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한 정보를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2. 개정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

#### 가. 협정체결국 외 비거주자의 정보 수집(제6조)

개정 이행규정은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법(Wider Approach)”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한 관할권(국가 또는 지역) 거주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관할권(국가 또는 지역) 거주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나. 보고대상 범위 확대(제4조)

구 이행규정상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특정미국인”이 보유하는 금융계좌에 한정하여 미국 정부에 그 정보가 보고되었으나, 개정 이행규정은 “우리나라와 효력 있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자”가 보유하는 금융계좌 역시 위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정부에 보고되는 것으로 그 보고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다. 모든 계좌에 대해 실사절차 적용(제9조 ~ 제13조)

구 이행규정은 FATCA 협정에 따라 계좌잔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금융계좌는 실사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 이행규정은 원칙적으로 계좌잔액의 구분 없이 모든 계좌에 대해 실사절차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라. 순수 내국인에 대한 본인확인서 징구 금지(제11조)

구 이행규정은 순수 내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가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조세목적상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서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 이행규정은 신규 개인계좌 개설시 금융회사가 본인확인기록을 통하여 계좌개설자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유일한 조세목적상 거주지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서 수취를 금지하였습니다.

## 3. 보고대상 계좌의 종류별 실사 및 보고 기준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 등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2015. 12. 21.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2017년부터 상호 정보 교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보고대상 계좌의 종류별 실사 및 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        |                                     | 실사기한                                                          | 보고잔액         | 최초 제출시점 <sup>1</sup> |                     |
|------------------|--------|--------|-------------------------------------|---------------------------------------------------------------|--------------|----------------------|---------------------|
| 계좌유형             |        | 기준     |                                     |                                                               |              |                      |                     |
| 신규고객             |        | 다자간    | `16.1.1 이후 개설                       | 계좌<br>개설시                                                     | 매년말 잔액       | `17.7월               |                     |
|                  |        | 한·미    | `14.7.1 이후 개설<br>(매년말 5만달러이하 예금 제외) | 계좌<br>개설시                                                     | `14년말·매년말 잔액 | `16.7월 <sup>2</sup>  |                     |
| 기<br>존<br>고<br>객 | 개<br>인 | 고<br>액 | 다자간                                 | `15.12월말또는후속년도말<br>백만달러 초과                                    | `16.12.31    |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 `17.7월              |
|                  |        |        | 한·미                                 | `14.6월말또는`15.12월말 및<br>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 `15.6.30     | `14년말·매년말 잔액         | `16.7월              |
|                  |        | 소<br>액 | 다자간                                 | `15.12월말 백만달러 이하                                              | `17.12.31    |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 `18.7월 <sup>3</sup> |
|                  |        |        | 한·미                                 | `14.6월말 5만달러초과 <sup>4</sup> ~<br>백만달러이하<br>(매년말 5만달러이하 예금 제외) | `16.6.30     | `14년말·매년말 잔액         | `17.7월 <sup>5</sup> |

1 이후 매년 7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2 당초 '15.7월이 보고기한이었으나,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비준 지연으로 '16.7월로 일정 변경.

3 '16년도 중에 실사절차가 이루어져 보고대상 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17.7월까지 제출, '17년도 중에 실사·확인시 그 다음연도인 '18.7월까지 제출.

4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25만 달러 초과.

5 '15년도 중에 실사절차가 이루어져 보고대상 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16.7월까지 제출, '16년도 중에 실사·확인시 그 다음연도인 '17.7월까지 제출.

|    |     |                                   |           |                |        |
|----|-----|-----------------------------------|-----------|----------------|--------|
| 단체 | 다자간 | ‘15.12월말 또는후속년도말 25만 달러 초과        | ‘17.12.31 |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 ‘18.7월 |
|    | 한·미 | ‘14.6월말 25만달러 초과 또는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 ‘16.6.30  | ‘14년말·매년말 잔액   | ‘17.7월 |

CRS는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공란으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7년 시행국으로서 2015. 12. 31.을 기존계좌와 신규계좌의 구분 기준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행국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와 같이 2015. 12. 31.을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구분하는 기준 시점으로 정해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이행규정의 시행 시기(부칙 제1조)

개정 이행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순수 내국인에 대한 본인확인서 수취를 금지하는 제11조 제4항은 2016. 4. 1.부터 시행됩니다.

## 5. 개정 이행규정이 갖는 의미 및 영향

개정 이행규정의 고시로, 우리나라는 FATCA 및 CRS 시행에 필요한 국내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과세당국이 다른 국가(과세당국)에 “해당국 거주자에 대한 한국 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한국 거주자에 대한 해당국 금융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거주자의 역외소득 및 역외재산이 우리 과세당국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조세 환경 및 과세 행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46 | E-Mail. <a href="mailto:hjikim@shinkim.com">hjikim@shinkim.com</a>   |
| ● 정태성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28 | E-Mail. <a href="mailto:tsjeong@shinkim.com">tsjeong@shinkim.com</a> |
| ● 이종원 변호사     | TEL. 02 316 1791 | E-Mail. <a href="mailto:jwonlee@shinkim.com">jwonlee@shinkim.com</a>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a href="mailto:ihchung@shinkim.com">ihchung@shinkim.com</a>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